

충북대학교 인권상담소 운영지침

제정 2019. 12. 17.

개정 2020. 2. 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권익 침해” (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제외한다.
3.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사건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대학교 구성원“이란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강사,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의 행위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등의 피해의 신고접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침해 등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4. 인권침해 등의 행위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5. 인권침해 등의 행위, 고충민원, 제도개선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7.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이버신고센터) 상담소장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상담사) 상담소는 전문상담사를 두고, 제4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담소에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장이 임명한다. 단, 추천직 위원은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장 추천자 2명
2. 교수회 추천자 2명
3. 직원회 추천자 2명
4. 총학생회 추천자 2명(이하 “학생위원“이라 한다)
5. 외부 전문가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인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소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인권침해 등 사건에 연루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척 및 기피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피) 위원은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및 조사의 대상)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상담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상담소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사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13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상담소장은 위원회에서의 제1항에 의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 처리)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상담소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중재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② 상담소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상담소장 또는 상담소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④ 상담소장은 상담소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해당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구제조치 등) 상담소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의 통지) 상담소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으로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명령, 접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불복 및 재심의) ① 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때에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시,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에 한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8조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의 보호)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 및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1조(2차 피해의 방지)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의 금지) 이 지침에 따라 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0. 2.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